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상·노외주차장 내 사고차량 소유자에게  
영상정보 원본 열람 허용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97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97호)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3 |
| 1. 노상·노외주차장 내 사고차량 소유자에게 영상정보 원본 열람 허용(안 제10조의2 및 제17조) ..... | 3 |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2218997)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18.
3. 회 부 일 : 2026. 5. 1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등에서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주차장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사자로서는 사고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확인이 사실 확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촬영된 영상정보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 주차장 관리자가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고 당사자 간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치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설령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고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를 선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절차적 지연

으로 인해 사고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실정임. 그 결과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 행정력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차장 관리자와 차량 소유자 간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소유자임이 확인된 자에 한정하여 사고 상황 확인을 위한 영상 원본을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만, 이 법률안은 피해 자동차 소유자 확인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피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의 자동차등록증을 통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부합하도록 열람 절차, 방법, 열람 시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조제4항·제5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노상·노외주차장 내 사고차량 소유자에게 영상정보 원본 열람 허용(안 제10조의2 및 제17조)

#####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고 원인 및 상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관리자가 사고 범위에 한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sup>1)</sup>의 영상정보 원본을 그대로 열람(사본의 제공 제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유자 확인 절차 및 열람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안 제10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조제4항·제5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br>①·② (생략)<br><u>&lt;신설&gt;</u> |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br>①·② (현행과 같음)<br><u>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상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u>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p>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p> <p>① ~ ③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 <p>다)의 영상정보 원본을 그대로 열람(사본의 제공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소유자 확인 절차 및 열람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상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원본을 그대로 열람(사본의 제공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소유자 확인 절차 및 열람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주차장 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CCTV 영상은 사고 경위 및 가해 차량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나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찰서 등 공적 기관을 통하거나 제3자 비식별화 처리를 하여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렵고,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경찰력이 동원되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노상·노외 주차장<sup>2)</sup>에서 사고 차량의 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주차장관리자가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당사자의 영상정보 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사실확인 및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sup>3)</sup>,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sup>4)</sup>, 예외에 있어서도 범죄 수사, 재판수행 등을 위한 경우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등<sup>5)</sup> 개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생략)

2. ~ 8. (생략)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③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④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3자 제공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 원본을 그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sup>6)</sup>을 제한하는 내용임.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입법상의 의무를

---

다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 ④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함.(헌법재판소 2005. 5.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부과하고 있음<sup>7)</sup>.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소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은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주차장 내 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개정안의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되며, 차량 소유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영상정보의 열람이 가능하고, 제3자가 포함된 비식별조치 등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얼굴, 차량번호, 동선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수단을 허용는 내용 이므로,

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의 신속한 재산상 피해구제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해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당하는지, 양 법익 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영상정보 원본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sup>8)</sup>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및 원칙과의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2항<sup>9)</sup>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은 같은 법 제1조<sup>10)</sup>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

8)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위 4가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목적의 정당성 :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
- 수단의 적절성 :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9)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10) 「개인정보 보호법」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sup>11)</sup>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으로도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함에도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을 비식별처리 없이 그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내용은 입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셋째, 개인정보 열람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여 비례성 및 입법적 균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sup>12)</sup>.

「의료법」에서는 수술실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sup>13)</sup>.

####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13)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 ④ (생략)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

이처럼 기존 입법례에서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이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이거나, 의료분쟁과 같이 정보불균형으로 환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역에서도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 등 일정 요건 아래에서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개정안은 주로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한 경위 확인 및 재산상 피해구제의 신속성·편의성을 목적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기존 입법례에서 보호하는 법익 및 열람요건과 비교하여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비례성과 입법적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다른 유사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개정안은 주차장 중에서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등에 대해서만 영상정보 원본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CCTV를 통한 사고 경위 확인 및 피해구제의 필요성은 주차장에 국한되지 않고, 도로, 공동주택 단지, 상가·건물 주변 등 CCTV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차량 접촉사고나 재산상 피해사고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

---

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 ⑪ (생략)

사고 장소에 따라서 비식별처리 없는 원본 영상의 열람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 사고 피해자의 영상정보 접근 및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사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됨.

특히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내 접촉사고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개정규정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있어, 동일하게 주차장 내 사고임에도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영상정보 원본 열람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음.

노상·노외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로서 원본 열람을 인정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고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다섯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영상정보 열람 대상·방법·주체 등이 불명확하거나 공백이 있어 제도적 설계가 미비한 부분이 있음.

개정안에서는 영상정보 열람 요청 사유를 “접촉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접촉사고 등’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개정안에서는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면서 “사본의 제공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영상 파일의 무분별한 외부 반출이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제한하

고 단지 시각적 확인만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대법원은 CCTV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 개인의 정보를 지득하여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sup>14)</sup>,

개정안이 ‘열람’과 ‘사본의 제공’을 구분하여 후자만 제외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의 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휴대전화 촬영, 화면녹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영상을 복제할 가능성도 있어, 사본의 물리적 교부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리고, 개정안은 열람 요구 주체를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렌터카·리스차량 등의 경우 실제 차량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는 영상정보 열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주차장관리자가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열람 여부를 주차장관리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열람요구자의 범위는 좁게 규정된 반면, 관리자의 재량은 넓게 인정되어 사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라는 개정취지와 규정 내용이 충

---

14)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시청하여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 18397)

분히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부칙에서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시행 당시 영상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사고에도 개정규정에 따른 열람 요청이 가능한지 적용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용례를 두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1) 국토교통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 열람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실익이 적음.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사실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우려됨.

### 2) 법무부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사실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른 ‘사본의 제공은 제외’ 부분은 판례가 인정하는 영상정보 ‘제공’의 실질적 개념과 충돌할 여지가 있고, 사실상 복제 행위를 차단하기에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제3자 비식별처리로도 사고 경위 등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개별 법률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처리 우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허용하는 「영유아보육법」, 「의료법」상의 기존 입법례들과 비교할 때, 본 개정안은 보호하려는 편의성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커 입법적 균형과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CCTV 영상 원본을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주차장 관리자와의 갈등 해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그러나, 현재 사회 전반에 설치·운영 중인 CCTV가 약 2천만 대에 달하고 있고, 주차장 외에도 각종 사건·사고 상황 확인을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과 같이 주차장 접촉사고 등에 한정하여 별도 특례를 두기보다는 해당 분야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 마련을 통해 CCTV 영상 열람의 원칙과 기준, 영상 원본의 열람 요건과 사본의 제공 요건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제도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정무위는 사고 발생시 정당한 이해관계자(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CCTV 영상 열람 및 보관 요청 등을 허용하고, 사본 제공 시 비식별 조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sup>15)</sup>을 논의 중에 있는 바,

CCTV 영상 열람에 관하여 주차장에만 적용되는 별도 특례를 신설하기보다 사회 전반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종합적 규율 마련을 통해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

15) 박상혁 의원안(의안번호 제2208719호, 2025.3.7.), 이현승 의원안(의안번호 제2211996호, 2025.8.5.), 김태호 의원안(의안번호 제2213538호, 2025.10.13.) 등 3건

아울러, 사고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당해 사고 처리 및 개인 권리구제 등에 필요한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점, 일반적으로 차량 접촉 사고 처리 시에는 피해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한 이후 손해배상 요구 또는 경찰 수사 등의 추가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CCTV 영상 사본 확보가 필요한 점, CCTV 영상은 일정 시간 경과 시 자동 삭제되는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동 개정안과 같이 CCTV 영상 열람(사본의 제공은 제외)에 한해서만 규율하기보다는, CCTV 영상의 보존 요구 또는 사본 제공 요건과 사본 제공 시 조치사항 등과 같이 CCTV 열람 이후에 사고 처리 및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84 |